

체육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체육특기자(이하 '특기자'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학칙 제6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한 체육부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체육부는 가천대학교 체육부(이하 '체육부'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체육부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 2 장 체육특기자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업무

제4조(임직원) 체육부에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둔다.

1. 부장
2. 감독(지도교수)
3. 코치
4. 직원

제5조(체육부장) ①체육부장은 체육 이론 및 실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체육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체육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체육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감독·코치) ①감독(지도교수)과 코치는 다년간 해당 종목의 선수 생활을 하였거나 선수지도를 담당한 체육전문인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감독(지도교수)과 코치는 체육부장의 명을 받아 선수의 생활 및 실기를 지도한다.

제7조(감독·코치의 업무) 감독과 코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특기자 발굴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합·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기자 출결에 관한 사항
4. 각종 운동경기 및 훈련에 관한 일지 기록·보존
5. 각종 운동경기에 관한 평가회의의 회의록 및 평가서 작성·보존

4-1-9~2 제4편 부속기관

6. 기타 체육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직원의 업무) 직원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체육부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2. 특기자 관련 운영계획(안) 작성
3. 체육부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독 및 코치 업무의 지원
5. 특기자 관련 문서의 접수 및 발송
6. 각종 체육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조(업무처리) 주요행사는 부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처리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특기자의 입학, 훈련, 학교생활

제10조(특기자 선발) 특기자 선발은 신입생 입학 전형시 특별전형 절차에 의하되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을 결정하여 입학울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기자의 서열 순위는 당해 경기종목별 경기기록 순위에 의한다.

제11조(선발 대상) ①단체경기 종목은 전국규모대회 4강 이상 진출, 개인경기 종목은 전국규모대회 3위까지의 입상실적이 있는 선수를 선발의 대상으로 한다.

②특기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업 및 학점인정) ①특기자는 훈련기간 및 대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아야 한다.

②특기자의 출석은 체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개개의 훈련 및 대회기간을 감독(지도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담당교수에게 사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3조(훈련) 훈련시간은 정상수업 종료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독이 정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제14조(대회출전) 선수가 대회에 출전코자 할 경우에는 출전 전에 대회개최 공문과 대회출전 계획서(별지1호 서식)를 체육부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진료) ①특기자가 훈련이나 대회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장이 감독의 확인을 받아 병원에 의뢰한다.

제16조(장학금) ①특기자에게는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별 감독(지도교수)의 평가 및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년 단위로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2. 훈련 태만, 지도 불응 및 학교 생활이 불성실 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지급한다.

제17조(특기자 자격 심사) ①체육위원회에서는 매학기 말에 특기자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재학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선수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선수로서의 활동에 결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학년도 말까지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실적이 없는 자

제18조(포상) 경기실적이 우수하고 본 대학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특기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재학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기자는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동부에서 이탈하거나 동아리 등에 가입하여 운동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감독의 지도를 거부하여 학교생활 또는 특기자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휴학하는 경우
4. 재학 중 군입대 또는 학군단(ROTC)에 입단하는 경우. 다만, 4학년에 한하여 본인의 특기와 관련한 군부대에 선발된 경우에는 담당 감독, 코치의 확인 후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락할 수 있다.

제 4 장 체육위원회

제20조(설치) 특기자 선발, 관리업무 및 체육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체육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4-1-9~4 제4편 부속기관

1.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2. 종목별 감독(지도교수)

제22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특기자 장학에 관한 사항
3. 특기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특기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기자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간사가 관리한다.

제2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운영세칙)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회 출 전 계 획 서

대회출전계획서	결					총장
	재					
대 회 명						
대회기간		훈련기간				
장 소						
참 가 자						
소요경비						
총 계						
위와 같이 대회 출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감독(지도교수) (인)						
첨 부	: 1. 대회 개최 공문 2. 3.					